

해외경쟁정책동향

본 협회 조사부

미국

Charles A. James, 독점금지국의 현대화를 발표

- 새로운 산업의 출현과 복잡한 경제환경에 있어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을 재배치할 것을 목적으로 한 변경 -

Charles A. James 독점금지국장은 금일, 새로운 산업, 네트워크 경쟁 및 기타 경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독점금지국의 현대화를 발표하였다. 이 시도의 목적은 독점금지국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책임의 범위를 다시 정의하고 보고라인을 합리화함으로써 더욱

더 복잡해지는 경제환경에 대응하려는 독점금지국의 자원을 재배치하는 데 있다. 또한 특정의 task force를 full section에 이행시키게 된다.

현재는 복수의 부과(部課)가 특정 안건에 대한 집행책임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현대화안은 특정분야의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집행상의 전문적 지식 및 자원을 집중시켜, 부과(部課)를

걸친 집행노력의 분산을 최소화하려고 고안된 것이다. 이 시도는 또한 민사합병 및 비합병문제 쟁방에 대해 각 과의 집행책임을 할당하고 있다. 이것은 통상 민사합병 또는 비합병심사 어느 쪽에 책임을 할당하기는 하지만 자주 이 두 유형의 문제를 취급한 대부분의 부과에서의 실제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현대화의 노력은 또한 정보기술, 전기통신 및 네트워크 경쟁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산업을 포함하는 특정분야 및 이러한 산업에 있어 전문적 지식의 집약 필요성의 출현 및 장래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 계획은 다른 대부분의 분야와 유사하게 이러한 분야에 있어 독점금지법의 심사 및 집행에 있어서 자원과 전문적 지식을 효과적으로 정리·배치하는 독점금지국의 능력을 개선할 것이다.

「이 현대화는 좋은 정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 산업에 있어 집행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점금지국을 21세기에 있어 새로운 경제(new economy)문제에 대응도록 하는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Charles A. James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독점금지국의 많은 부분은 현재의 구성 그대로이지만 몇 가지의 중요한

조직상 및 계획상의 변경이 행해지게 된다. 계획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 현재의 소송제1과는 「전미형사집행과:national criminal enforcement section」으로 개칭되고, 전미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위 심단의 형사집행부국으로서 가능 한다.
- 현재 소송제2과의 비공식적인 합병부문 및 합병 Task Force로서 존재하는 소송제2과는 소송제1과 및 소송제2과로 청하는 2개의 개별 민사집행과로 나눈다. 민사 Task Force는 소송제3과로 개칭된다. 이러한 과는 할당된 사안에 있어서 합병 및 비합병 문제를 포함, 민사집행 전반에 책임을 진다. 이러한 변경은 비합병 문제에 계속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을 확보하는 한편, 합병에 관련한 업무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 전기통신 Task Force는 「전기통신 미디어집행과」로 청해지는 영속적인 과로 되고 기술통합의 시대에 있어서 이 과의 업무가 전기통신을 초월하여 확대할 것 및 이러한 산업에 집중할 과의 영속적

인 필요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 한다.

• 현재의 컴퓨터·금융과는 강화되어 「네트워크·기술집행과」로 개칭된다. 이 변경은 더욱 더 복잡한 하이 테크놀러지, 네트워킹 및 지적재산 문제에 초점을 둔 독점금지국의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의 이러한 분야의 출현과 장래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것이다.

• 독점금지국은 이제 더 이상 「Health Care Task Force」로 청하는 독립된 부문을 갖지 않는

다. 오히려 Health Care Task Force의 인원과 기능은 다른 부과로 통합된다. 예를 들면 새로운 네트워크기술과는 이의 중요한 경제분석의 네트워크면을 다루는데 적합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 독점금지국의 5인의 차장은 민사집행, 규제문제, 형사집행, 경제분석 및 국제집행이라는 특정 주요 분야를 감독한다.

「금일 발표된 현대화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는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고라인을 정리하여 책임을 증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독점금지국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할 기회가 부여된다」라고 Charles A. James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하원 및 상원의 세출(歳出)소위원회는 법무부의 정책과 일치한 현대화의 노력을 승인하고 관리예산국과 의회로의 실시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

독점금지국은 이번 재편안에 대하여 2002년 2월부터의 완전실시를 예정하고 있다. 독점금지국의 새로운 조직도의 사본은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2002. 1. 4. 법무부 독점금지국 발표

연방법무부, MS에 대한 독점소송 합의안 수정

연방법무부는 30,000건이 넘는 일반인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독점소송 합의안을 수정했다. 수정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원벽한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보다 경쟁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2월 28일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에 제출된 30,000건이 넘는 일반인들의 건의 의견을 검토한 후, 마이크로소프트 독점사건을 합의로써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을 수정하였다고 발표했다. 이 수정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다 이행하

미국 법무부(DOU) 독점금지국의 조직개편 내용

종 전	개 편
◆ 차관보실	◆ 차관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자문관(신설) • 항소과(소속변경) • 법률정책과(소속변경) • 총무과(소속변경)
◆ 부차관보	◆ 경제 부차관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소송과 • 경제규제과 • 경쟁정책과
◆ 부차관보	◆ 국제 부차관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통상과
◆ 부차관보	◆ 형사소송 부차관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 지방사무소 • 국내형사과(총전 소송1과)
◆ 부차관보	◆ 규제 부차관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에너지·농업과 • 정보통신·미디어과(총전 정보통신 T/F) • 네트워크·기술과(총전 컴퓨터·금융과)
◆ 부차관보	◆ 민사소송 부차관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1과(총전 소송2과) • 소송2과(총전 합병 T/F) • 소송3과(총전 민사 T/F)

고, 장래에 이와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며, 소비자들이 보다 경쟁적인 소프트웨어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래 합의안 작성에 참가했던 연방 주 정부들과 마이크로 소프트는 이 수정안에 동의하였다.

연방법무부는 성립된 합의안을 법원의 최종명령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일반대중들의 건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응답과 합의안에 대한 수정 개요서, 연방 법무성과 합의안에 참가한 주 정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수정된 합의안 세부사항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합의안은 연방항소법원이 독점유지행위로 인정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관행들에 대한 금지안들을 포함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미들웨어의 위협을 막기 위해 계획할 다른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들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수정된 합의안은 경쟁적인 미들웨어 상품들이 개발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일정한 호의 조건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출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연방법무부는 밝혔다.

“이 합의안은 연방항소법원이 인정한 위반행위들에 대한 완벽한 구체책을 제시하고 있고, 독점금지 위반행위들에 대한 구제와 소비자를 위한 경쟁의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일반 대중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수정안은 이 효율적인 합의안을 더 개선하는 것이다”라고 Charles A. James 독점금지국장은 밝히고 있다.

만일 이 수정안을 법원이 승인한다

면, 이로써 1998년 5월에 시작된 소송을 종결하게 될 것이다. 연방법무부는 이 합의안은 연방지방법원과 연방 항소법원에서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한 진지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또한 1998년 소송제기 이후 법원이 상당부분 구체화시킨 사건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고 말하였다. 현재의 가장 바람직한 구제조치를 함에 있어서, 연방법무부는 법률적으로 연방항소법원이 인정한 책임범위 안에서만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동 책임범위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독점에 대해 위협이 되는 미들웨어의 출현을 막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특정 행위들에 한정된다.

e-mail 형태로 일반인들의 건의안을 접수한 연방법무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엄청난 분량의 건의안으로 이어졌다. 다만, 이들 중 많은 부분은 너무 단편적이거나 혹은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것들이었다. 일반대중들의 건의사항들은 법원에 2월 28일 제출되었고, 3월 4일 연방법무부의 Website에 게시되었다. 다만, 이 중 47개의 가장 구체적인 건의내용들은 2월 15일에 이미 게시되었다. 모든 건의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방법무부는 포괄적인 문서를 통해 그 건의안들에 대한 답변을 했다.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건의안들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자들이 제출한 것으로 그들은 다양한 미들웨어와 다른 소프트웨어 시장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에 더욱 엄격한 제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건의들에 대해 연방법무부는 이들이

제출한 구제조치 제안 사항들은 법원이 인정한 위반행위의 영역밖에 있는 것이거나 소비자들에게보다는 개인적인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었다고 답변에서 밝혔다.

수정안은 구체적인 언어적 표현과 관련하여 건의자들이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에 대해 여러 관련조항들을 보다 명확히 구체적으로 수정하였다. 수정안은 합의안의 언어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합의안의 초안을 작성할 때 당사자들이 합의한 의도들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수정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당사자들의 의도를 확실히 하고 다른 관련조항들을 무효로 만들지 않기 위해 APIs(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Section III.D와 Def. VI.A),
- “상호연관작동(interoperate)”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단어의 기재(Section III.E),
- 마이크로소프트가 차별되지 않는 조건으로 제3자들이 다양한 경쟁 상품들을 기본상품으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추가조항 삽입(Section III.H.2),
-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상품인지 아니면 타사상품인지를 근거로 하여 Windows 데스크탑의 특정 상품환경을 변경하지 않도록 하고, 변경하는 경우 차별 없는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화하기 위해 추가적 내용을 삽입(Section III.H.3),
- 특정 제3당사자로부터 마이크로

소프트에 대한 지적재산권 면허의 제공을 위한 조건들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들을 삭제(Section III.I.5).

- 마이크로소프트 미들웨어의 정의들이 당사자들이 의도했던 의미를 가지며, 이와 달리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용어 정의에 대한 조항을 수정(Def. VI.J)하고 “시기 적절하게”란 단어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의미를 명확화(Def. VI.R).

독점금지국의 Deborah P. Majoras 법무보좌관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중대한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들을 하였고 그러한 위반행위들은 즉각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수정된 합의안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위반행위들을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들의 재발을 방지하며, 미들웨어들을 위한 경쟁적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연방법무부의 조심스럽고 신중한 고려들을 담고 있다. 또한 이 수정안은 일반대중들이 건의안을 통해서 제시한 염려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법무부는 이러한 동의명령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독점금지법의 집행 절차에 일반 대중들의 폭넓은 참기를 반긴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2. 2. 28. 연방거래위원회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독점금지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사건분담절차 발표

미국 연방독점금지 집행기관들인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the Antitrust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과 연방거래위원회(the Federal Trade Commission)는 합병심사 및 기타 독점금지사건들에 대한 사건분담절차와 관련하여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3월 5일 발표했다. 합의문은 사건분담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독점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 사이에서 산업별 영역에 기초하여 주된 책임영역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어느 기관의 사법권 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Charles A. James 연방독점금지국장과 Timothy J. Muris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사건분담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모됨으로써 조사의 속수를 빈번하게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당국들이 전문가와 그들의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분담절차가 전면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본래 2002년 1월 17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합의안의 내용 검토를 요구하는 상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보류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법무부는 지난 6주 동안 사건분담 절차와 사건분담분쟁에 의해 야기된

조사지연 사례들과 양 기관들 사이의 전통적인 사건분담과 관련한 광범위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였다.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그 합의안이 실제 사건분담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것이고, 그에 의해 양 기관들이 독점금지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연방독점금지국의 책임자인 Charles A. James 국장은 “이 합의안이 우리의 법집행 노력을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각 산업영역을 분담하는 것은 연방법무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능한 반경쟁적 행위들을 조사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것은 업계에 보다 투명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사건분담절차는 공식적으로 1948년에 만들어졌고, 그 수정안은 1963년, 1993년 및 1995년에 만들어졌다. 양 기관 사이의 사건분담에 대한 전통적인 방법은 특정 산업영역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분담된 개별영역에 대한 경계선이 급격한 기술변화 앞에서 불분명해졌고, 규제완화조치들은 많은 기업들을 다각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사건분담방법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모두에게 관심사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 사건분담합의를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하던 사건분담처리의 효과는 상당부분 감소된 것이다.

“우리는 이 합의안을 우리 당국들의

독점금지법 집행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 그리고 협조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사건분담절차는 경쟁당국들이 보다 더 신속하게 어느 기관이 그 사건을 맡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더 빠른 심사의 시작과 종결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좀더 효과적인 세금의 사용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이고, 이 합의안은 바람직한 정부의 혁신책으로서 그 이익은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Muris 위원장은 밝혔다.

James 국장과 Muris 위원장은 사건분담에 관한 논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지연되면 사업자는 불안해지게 되고 비용도 증가될 수 있으며, 사건분담절차의 진행 동안 경쟁적 문제들이 조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 소비자들에게 위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사건분담에 대한 논의는 합병 및 비합병 독점금지집행행위에서 심각한 조사지연을 가져왔고, 부족한 경쟁당국의 역량을 실질적인 조사단계부터 분산시켜 왔다. 어떤 경쟁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든 해당 경쟁당국은 사전에 다른 경쟁당국으로부터 조사를 주인 받아야 한다.

2002년 2월 28일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조사지연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 회계연도의 시작이래 경쟁당국들이 공식적으로 경합을 벌였던 136개 사건들은 사건분담절차를 종료하는데 평균적으로 3주 반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다른 164개의 사건들은 비록 공식적인 사건조정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분담 처리에 1주일 이상을 소요하였다. 평균적으로 이러한 300개의 사건

들 즉, 이 기간 동안 사건분담 조정 요구가 제기된 모든 사건들의 24%를 차지하는 사건들에서 3주 정도의 기간이 지연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사건분담에 관한 논의가 수 개월 동안 조사를 지연시킨 적도 있었다. 3월 5일 발표된 합의안에 따르면 이들 300개 사건들 중 80% 이상은 2일 안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James 국장과 Muris 위원장은 비록 사건분담절차가 마찰 없이 진행되었지만 보다 합리적인 책임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승용차와 트럭의 디자인과 생산을 예로 들면서 경쟁당국의 수장들은 이러한 행위의 관련분야들이 관례적으로 연방법무부(트럭)와 연방거래위원회(승용차) 사이에서 분리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합의안은 생산 그룹에 대해서는 승용차와 트럭을 합하여 연방거래위원회의 범위하에 배치함으로써 각 경쟁당국들의 자원이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배분을 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많은 그룹화 지침이 합의안의 산업영역 분담 협의에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합의안은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모두가 다루어온 미디어와 오락산업을 연방법무부에 할당하고 있다. Muris 위원장은 "합의안은 미디어와 오락산업에서 독점금지법의 집행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에 할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방법무부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연방거래위원회를 앞서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이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경쟁당국의 관련 전문성에 대한 비교는 연방법무부가 이러한 조사

를 수행하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예를 들어 연방거래위원회의 다중 채널 비디오 유통 프로그램(케이블과 위성방송 포함)에 대한 전문성은 연방법무부의 전문성보다 덜하다. 비록 연방거래위원회가 많은 케이블 방송사업자들의 거래를 조사해 왔지만 이 분야에 대한 위원회의 전문성 대부분은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사건분담절차에서 별다른 가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어떤 경우, 연방거래위원회의 케이블 방송사에 대한 사건조사 대부분은 단지 수평적인 사건들만을 포함하고 있고 최근 몇 년 동안 미디어 합병에서 제기되는 복합적인 수직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합의안에 따르면, 항공, 농업관련 생물학 기술, 항공전자공학, 맥주, 컴퓨터 소프트웨어, 화장품과 모발유지, 국방 전자산업과 금융서비스, 보험, 증권, 읍선, 채권, 선물시장과 평판유리, 건강보험, 산업용 장비, 미디어 오락, 금속, 광산, 광물, 미사일, 탱크, 장갑차, 해군용 방어무기, 사진, 필름, 펠프, 종이, 고무, 목재, 전기통신 서비스 및 장비, 여행, 교통 서비스, 그 외 폐기물 산업은 연방법무부의 영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승용차와 트럭, 건설자재, 화학, 컴퓨터 하드웨어, 에너지, 식료품 제조업, 식료품점의 운영사업, 의료, 산업용 가스, 군수품, 약품과 생명공학, 전문가 서비스, 소매점 운영사업, 인공위성제조와 발사체, 의류산업 부문은 연방거래위원회에 할당되어 있다.

또한 합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언급하고 있다.

- 각 경쟁당국의 Web 사이트에 게시될 사건분담의 전개 방식,
- Hart-Scott-Rodino법에 따른 신고들과 사건분담을 하기 위한 공통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 각 경쟁당국에서 사건분담 업무를 담당할 관리 임명,
- 사건분담절차와 진행 사건들을 검토하기 위한 매주간 회합 및 보고,
- 각 경쟁당국에게 신속히 사건분담을 행할 것을 촉구하거나 혹은 그 러한 사건들에 대한 사건수사 권한을 다른 경쟁당국에게 강제로 양도하게 하는 “negative option” 조항들과 함께 사건 검토를 위한 신속한 시간 계획서,
- 사건분담 검토를 위해 분명하게 확정된 단계,
- 경쟁당국들이 사건분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중립적인 평가자로부터 평가를 받기 위한 조항,
- 특정 산업들의 할당과 합의안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

예전에 독점금지 집행기관 관료를 역임했던 상원 법사위원회의 독점금지 소분과 위원장과 고위 임원들, 미국 법조협회의 독점금지국 분과위원, 사업자협회로부터 최근 몇 주 동안 받은 편지들은 양 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 각 기관들이 우선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경쟁당국별 각 산업분야를 분담한 사건분담절차의 개선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상원의원 Herb Kohl과 Mike DeWine이 공동으로 James 국장과 Muris 위원장에게 보

낸 편지들에서는 현재 사건분담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합의가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11명의 전 독점금지당국의 수장들, 즉 Terry Calvani, David A. Clanton, Joel I. Klein, Sanford M. Litvack, A. Douglas Melamed, James C. Miller, III, John M. Nannes, Robert F. Pitofsky, James F. Rill, Charles F. Rule 및 John H. Shenefield가 서명한 편지에서는 이러한 합의안이 산업들과 상품들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분담을 분명히 하고 현존 사건분담영역 안에서 모호한 몇몇 사건들에 대한 사건조사 담당절차를 분명히 하는 획기적인 개선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002. 3. 5. 연방법무부

■ 선마이크로시스템스, MS 제소 ■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지난 3월 8일 불공정경쟁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소했다. 제소 이유를 요약하면,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독점력을 이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제소했다고 밝혔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PC 운영체제, 웹브라우저 시장 등에서 MS가 독점을 불법적으로 유지함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workgroup 서버 시장에서도 독점화를 시도했으며, 그 밖에 배타적 거래와 끼워팔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MS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라이

센스로가 줄었으며,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서버, 소프트웨어제품, 컨설팅서비스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회사의 명성과 상표의 가치도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앞으로 MS를 겨냥한 법정공방이 또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MS가 최근 윈도우XP 운용체계(OS)를 공개하면서 자사가 주도해온 자바 언어를 제외시킴으로써 자바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또 다른 페키지들에서도 기존의 독점력을 약용해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자바 프로그램을 제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MS가 얼마 전 내놓은 웹서비스 개발툴인 비주얼스튜디오닷넷에서도 자사를 배제시키고, 자체 자바 버전을 포함시킨 것도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MS의 이러한 행동들이 ‘기존의 자바 시장을 고사시키기 위한 획책’이라고 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MS가 소프트웨어 배포시 자사의 자바도 포함시켜야 하며, MS의 자체 자바코드 배포를 즉각 중지시켜 주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MS의 조치로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최소한 10억 달러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도 요구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주장에 대해 MS의 짐 데슬러 대변인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선마이크로시스템스의 주장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윈도우 사용자들이 매일 자바 기술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고급 서버시장에서 IBM에 밀리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2002회계연도 매출이 3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는 지난 1997년 10월 자바 채택 문제로 MS를 제소했는데, 이 소송은 2001년 1월 MS가 선마이크로시스템스에게 2천만 달러를 보상하고 자바사용권을 포기하기로 하면서 종결되었다.

법률전문가들은 MS에 대한 이러한 선마이크로시스템스 소송은 연방독점금지당국이나 주 정부의 독점금지당국에 의한 것보다 더 공격적이고 포괄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여러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형태로는 선마이크로시스템스가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MS에 대한 제소는 AOL타임워너의 넷스케이프 사업부가 지난 1월 인터넷 브라우저 문제로 MS에 법정 다툼을 시작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또한 MS는 현재 정부에 의해서도 독점금지 위반행위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2002. 3. 8, 3. 12 CNET News

E U

중요치 않은 협정에 관한 새로운 고시(de minimis 고시)

유럽위원회는 EC조약 제81조제1항에 비추어 명백하게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중요성이 낮은 협정에 관한 새로

운 고시(de minimis 고시)를 채택하였다. 새로운 고시는 1997년의 구 고시를 대체한다. 「de minimis 고시」의 개정은 위원회에 의한 EC경쟁법의 재검토의 일부이다. 동 고시는 사업자간의 협정이 조약에서 금지되지 않는 경우를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서 사업자(특히 소규모사업자)의 법 준수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다. 동시에 위원회는 경쟁정책의 관점으로부터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사건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고 보다 문제가 많은 협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EC조약 제81조제1항은 가맹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공동체시장내의 경쟁을 방해하고 제한내지 왜곡할 목적 또는 효과를 가져오는 협정을 금지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협정이 공동체내의 거래 또는 경쟁에 주는 영향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위원회는 새로운 고시에 있어서 무엇이 경쟁의 명백한 제한이 아닌가, 즉 무엇이 de minimis이고 무엇이 제81조제1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가를 시장점유율 기준을 이용하여 정하고 있다.

새로운 고시는 경제적 접근방법을 반영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점을 가지고 있다.

하고 있었다. 새로운 고시는 각 기준을 각각 10%, 15%로 높였다. 경쟁상의 우려는 사업자가 최저한 시장력을 갖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새로운 기준은 이 점을 고려하고 동시에 전체 시장구조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개 기준간의 차이는 구 고시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경쟁업자간의 협정이 비경쟁업자간의 협정보다도 쉽게 반경쟁적 효과에 연결되기 쉽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 누적적인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하는 협정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최초 시장점유율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구 고시는 「복수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의해 체결된 유사협정의 병행적 네트워크의 누적적 효과에 의해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에서 행해지는 협정을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문제로서 맥주(beer)와 기술린(petrol) 같은 분야의 사업자는 통상 de minimis 고시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새로운 고시는 이러한 유사협정의 병행적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시장에 대하여 특별히 5%의 「de minimis」 시장점유율을 도입하고 있다.

3) 수평적 및 수직적 일괄면제적용규칙과 유사 경성(hardcore)제한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고시는 하드코아 제한 즉, 통상 관계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항상 금지되는 가격카르텔과 시장분할과 같은 제한을 보다

명백하게 그리고 보다 모순되지 않은 방법으로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하드코아 제한은 *de minimis* 고시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할 수 없다. 새로운 고시는 비경쟁업자간의 협정에 관하여 수직적 협정에 관한 일괄적용면제규칙 2790/1999호3에서 규정한 하드코아 제한을 계승하고 있다. 새로운 고시는 경쟁업자간의 협정에 관하여 전문화협정에 관한 일괄적용면제규칙 2658/2000호4에서 규정한 하드코아 제한을 계승하고 있다.

4) 중소기업간의 협정은 일반적으로 *de minimis*이다.

새로운 고시는 중소기업간의 협정이 모두 회원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간의 협정은 일반적으로 제81조제1항의 범위로부터 제외된다.

새로운 고시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 또는 자신의 발의에 의해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선의로 자신의 협정이 등 고시에 해당한다고 추측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고시는 또한 법원 및 회원국 당국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및 회원국 당국에 대하여 제81조 적용지침을 주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요성이 낮은 협정에 관한 새로운 고시는 공동체관보(2001. 12. 22, C 368)에 게재되고 인터넷(<http://europa.int/comm/competition/antitrust/deminimis/>)으로도 입수

할 수 있다.

2002. 1. 7. 유럽위원회 발표

유럽위원회, 라이센싱 협정의 일괄적용면제에 관한 논의를 개시

유럽위원회는 기술이전협정에 대한 제81조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경쟁규칙을 정한 규칙 제240/96호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리포트를 채택하였다. 공동체의 경제발전 및 세계의 경쟁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능력을 새로운 기술을 고안하여 이것을 넓은 범위에 보급시키는 산업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정책분야이다. 경쟁은 혁신의 주요한 추진력의 하나이며 이런 이유로 경쟁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보호간의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평가 리포트는 신기술의 발달 및 보급에 의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협정 및 라이센싱 공동연합(pool)의 취급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리포트에 있어서 라이센싱 협정에 관한 산업계, 소비자단체 및 기타 관계자와의 논의 후 2002년 후반에 라이센싱 협정에 대한 제81조의 적용에 관한 새로운 경쟁규칙을 제안하였다.

EC조약 제81조제1항은 회원국간의 거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또한 공동체시장내의 경쟁을 방해, 제한 내지 왜곡할 목적 또는 결과를 가져오는 협정을 금지하고 있다. 반경쟁적 협정은 제81조제3항에 따라 당해 협정에 의해 초래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큰 경우, 제81조제1항의 금지

로부터 면제된다. 위원회는 동일성질을 갖는 협정의 범주를 일괄적용면제할 수 있으며 1996년에 특히 라이센싱 및 노하우 권리 포함하는 기술이 전에 관한 일괄적용면제규칙 제240/96호(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이하 "TTBE"라 함)를 채택함으로써 특정 라이센싱 협정에 대해 적용면제를 하였다.

리포트는 TTBE의 적용 및 정책 접근방법에 대해 중요한 분석을 제공하게 된다. 리포트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이하 "IPRs"라 함)의 라이센싱 측면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논의, 경쟁정책과 기술혁신정책의 보완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공동체에 있어 IPRs의 라이센싱에 대한 경쟁정책의 접근방법과 미국에 있어서의 접근방법과의 비교를 포함하고 있다. 보다 경제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R&D(연구개발)협정 및 전문화협정도 마찬가지로 유사협정에 관한 새로운 일괄적용면제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TBE를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리포트의 기본적인 연구결과

위원회는 리포트를 채택하기 전에 산업계가 TTBE의 재검토에 찬성했던 것을 제시하고 또한 현행 규칙의 간소화 및 명확화를 진행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예비적인 실태조사를 행하였다.

리포트는 TTBE가 시장에 주는 실제 영향보다도 협정의 형식에 관계하는 기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TTBE에는 실제 4개의 주요한 점이 있다.

첫째, TTBE는 지나치게 규범적이며 효율적인 거래를 권장시키지 못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방해하는 구속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TTBE는 특정 특허 및 노하우 라이센싱 협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TTBE의 이러한 협의의 적용범위는 현대의 라이센싱 협정(예를 들면 pool협정, 저작권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의 복잡성에 대처하기에는 점점 더 불충분한 것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많은 제한이 현재에는 위법으로 생각되거나 또는 충분한 경제학적 이유 없이 일괄적용면제로부터 제외되고 있다. 이것은 특히 라이센싱된 IPR의 범위를 넘어 폭넓은 특정의 제한(예를 들면 경업피지의무, 끼워팔기)에 관계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경제적 분석의 관점으로 보면 경쟁자와의 경쟁 관계, 시장구조 및 당사자의 시장력에 의해 효율을 증대하거나 또는 반경쟁적인 것으로도 될 수 있다.

넷째, TTBE는 협정의 형식에 주목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경쟁자인 것과 또는 시장에 있어서 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81조제3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경우까지 일괄적용면제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타적인 라이센싱의 허락은 이것이 시장참입으로의 접근을 다른 사업자가 얻는 것을 방해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허락된 경우에는 종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몇 가지 논점

리포트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하여 코

멘트를 포함하고 있다.

- 특히 및 노하우만 적용되는 TTBE의 범위는 저작권, 의장권 및 상표도 대상으로 하도록 확대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일련의 저작권 라이센싱에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포함 많은 분야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 TTBE는 또한 프랜차이즈 라이센싱 풀처럼 2이상의 사업자간의 라이센싱 협정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협정은 증대하는 신기술의 복잡성을 고려해야하는 산업에 대해서도 더욱 더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 점에서 복수 당사자간의 라이센싱은 특히 당해 풀에 모든 특허가 제공되어지지 않는다면 당해 신기술의 발달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효율을 증대하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복수 당사자간의 라이센싱은 또한 특히 당해 협정이 경쟁기술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참가사업자에게 현재 또는 장래기술에 대하여 서로 최저한의 가격으로 또는 배타적 기초위에서 라이센싱을 허락할 것을 요구할 경우 중대한 반경쟁적 효과를 갖게된다. 이러한 경우 복수 사업자간의 라이센싱 협정은 카르텔을 숨기고, R&D에 종사하는 당사자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게 되어 결국 혁신을 저연시키게 된다.

- 비당사자간의 라이센싱 협정에 대한 더욱 관대한 접근방법 일반적으로 협정의 당사자가 수직적 관계에 있는 경우 즉, 경쟁자가

아닌 경우 배타적 라이센싱은 효율을 증대하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IPR의 보유자가 라이센싱한 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라이센싱을 행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배타성은 자신의 투자로의 무임승차에 대하여 라이센싱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양당사자가 더욱 더 개선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 당사자간의 라이센싱 협정에 대한 보다 진중한 접근방법 경쟁업자간의 협정은 당해 라이센싱이 만약 이 라이센싱이 없다면 라이센서와 라이센시간에 발생할 수 있을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 몇 가지의 경쟁상의 우려를 야기시킨다. 한편으로는 배타적인 라이센싱은 특히 당해 라이센싱이 상호 호혜적인 것인 경우 또는 배타성이 라이센싱 되고 있지 않은 경쟁제품에 까지 확대되고 있는 경우 지역 또는 고객할당을 통하여 종종 시장 분할을 초래한다. 경쟁업자간의 라이센싱 협정에서 합의된 생산할당은 직접 생산제한에 손쉽게 이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의 조건하에서 특히 조인트 벤처에 있어 라이센싱 및 비상호적 라이센싱의 경우 배타성은 브랜드내 경쟁의 저하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한다. 경쟁에 주는 부정적 효과보다도 효율성이 더 뛰어난 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협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시장력 및 시장구조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02. 1. 7. 유럽위원회 발표

일본

정보통신심의회 통신사업의 경쟁정책방안 2차 보고 발표

일본 총무성은 지난 2000년 7월 26일 당시 전기통신심의회에 자문을 구한 'IT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의 경쟁정책방안'에 대해, 정보통신심의회(회장 아키야마 요시히사)로부터 2002년 2월 13일 제2차 보고를 받았다.

다음은 2차 보고내용 중에서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정책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였다.

I. 경쟁정책의 기본방침

1. 경쟁정책의 개념 정리

경쟁정책의 기본목적은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각 사업자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창의적인 경쟁형태로 업종이나 국경을 초월한 경쟁이 전개되도록 조건을 정비하는데 있다.

가. 비구조적 경쟁정책

다양한 전기통신업무를 위한 설비를 동·서 NTT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전제하고, 사업활동에 사전·

사후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환경을 창출·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경쟁정책으로는 업무범위규제, 요금규제, 비대칭규제 등이 있다. 이를 네트워크방형 경쟁정책과 기능분리형 경쟁정책으로 나눈다면, 전자는 특정사업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나 이에 부가된 기능에 다른 경쟁사업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기획의 동등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후자는 필수설비자원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사업자가 독점적 시장에서 운영하는 업무에 관한 활동과 경쟁적 시장에서 운영하는 업무에 관한 활동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필수설비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한 경쟁자해행위를 방지하는 방법을 말한다. 독점적 서비스와 경쟁적 서비스의 세트 할인 등의 번들서비스 제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신규참가 촉진형 경쟁정책

다른 업종으로부터의 신규참가 촉진형 경쟁정책과 사업구분 재검토에 의한 경쟁정책이 있다. 전자는 다른 산업분야의 회사가 기존설비나 노하우를 활용하는 형태로 전기통신분야에 신규참가하는 환경을 정비하여 전기통신시장의 경쟁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다. 후자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나 서비스제공형태의 다양화, 통신과 방송의 융합경향에 대응하여 제1종, 제2종 등의 사업구분을 검토하고 규제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춤으로써 새로운 영업의 전개를 용이하게 한다는 경쟁정책이다.

다. 구조적 경쟁정책

시장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영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자본분리형 경쟁정책과 구조분리형 경쟁정책으로 나뉜다. 전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기업그룹을 형성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그룹내 각 사의 자본적 결합을 완화·철폐하여 그 기업그룹의 시장지배력을 낮추거나 그룹내 각 시간의 경쟁분위기를 활기하여 시장 전체를 보다 경쟁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후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여러 개의 사업단위로 분할하여 시장지배력을 낮추거나 시장 전체를 보다 경쟁적인 환경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한다.

2. 경쟁정책의 기본관점

가. IT인프라정비 촉진에 기여하는 경쟁환경 확립

브로드밴드 액세스망의 다양화와 저렴화를 위해 브로드밴드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줄어들지 않도록 규제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추어 전기통신사업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정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 동·서 NTT의 업무범위 확대와 지역통신시장에서 경쟁촉진의 관계
향후 경쟁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서 개정 NTT법에 근거하여 동·서 NTT의 업무범위 확대 인정시의 요건인 '공정한 경쟁조건 확보'와 경쟁정책간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NTT법은 새로운 활용업무가 신청될 때마다 '공정한 경쟁확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해당업무와 무관한 지역통신시장에서의 경쟁 진전을 활용업무 인가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또한 동·서 NTT의 업무범위 확대를 인정하는 경우 요구되는 공정경쟁 조건이 총족됨에 따라 지역통신시장의 경쟁정책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별도의 경쟁정책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 경쟁촉진조치에 동반되는 비용과 위험부담 규정 확립

네트워크방형 경쟁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서 NTT측에는 비용과 투자위험이 따른다. 이를 사업자간에 있어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규정화해 두는 것이 경쟁정책을 원활하고 경쟁중립적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비용과 위험부담을 규정해 두는 것이 새로운 서비스개발 선택 결정에 있어서 예상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환경 정비

부당한 취급, 서비스 선택의 오도 및 개인정보 악용이나 누설 등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많다. 소비자문제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쟁정책 검토시 이를 병행하여 검토해야 한다.

마. 주주이익과 경쟁정책의 관계

경쟁정책을 검토함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자, 특히 NTT의 주주이익보호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경쟁정책을 통

해 실현시켜야 하는 이용자의 이익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의 관계를 정리하여야 한다. NTT 주주이익을 문제시할 경우, 이를 그룹내 각사의 주주이익과 그룹 전체의 이익을 구별하여 논의해야 한다. 특수회사이기는 하지만 민간 주식회사인 NTT그룹 각 사가 기업가치의 최대화를 도모하는 사업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서 NTT는 NTT법에 근거한 특수회사로서 공익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제공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필수설비에 대한 공평한 접속을 확보하기 위한 약관을 인가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특수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 주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I. 시장환경 정비

1. 소비자의 자립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환경 정비

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창출하는 경쟁정책과 소비자가 능동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환경을 실현하는 소비자간 정책은 통합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경쟁의 진전으로 인해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나 내용이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반면,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보보유량의 비대칭성이 확대되어 소비자의 자립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거나 부적절한 선택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되거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얻을 수 있

도록 여러 방법으로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환경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집행체제 강화

전기통신사업법에 비대칭규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사이에서 반경쟁적 행위 등이 금지되는 반면, 비지배적사업자는 계약약관이나 접속협정에 대해 종래의 인가제를 신고제로 하는 등의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다.

비대칭규제는 엄격하게 운용하는 한편, 향후 시장에서의 사업자간의 분쟁이나 반경쟁적 행위 등에 대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동 가이드라인에 금지행위유형을 추가하여 반경쟁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회계의 공표의무가 있으나, 가령 계열 자회사와의 거래정보, 개별 서비스의 지원사항 등 보다 자세한 회계정보를 밝히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기통신사업분야에서의 네트워크방형 공정하고 원활하게 실현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사 필요한 접속이나 선로부설 등에 관한 사전적 규정정비와 사후적 분쟁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당사자간 분쟁을 제3자가 공정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2002. 2. 13. 총무성